

대통령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급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 -----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3.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u> <u>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u> <u>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u> <u>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u> <u>지 못한 경우</u>
6.~8. (생 략)	6.~8. (현행과 같음)